

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, 「거치식 예금 약관」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,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취급대상

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- ① 이 예금은 「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」 또는 「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」 또는 「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」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, 1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로 합니다.
- ③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로 합니다.
- ④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 만기처리방법

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

1. 「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」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
2. 「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」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
3. 전 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별도의사표시에 따라 정합니다

②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RP) 또는 개인형(IRP) 퇴직연금

1. 이 예금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 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
2. 「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」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

제6조의 2 재예치 기준일

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영업일에 재예치하며,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.

제7조 적용이자 및 이자계산

- ① 이 예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신규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에는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(만기이자율)을 적용하고, 만기일 이전에 제8조 사유로 특별중도해지(분할인출)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이자율을 적용하며, 그 외 사유로 일부해지 (분할 인출)하는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예금의 만기 후 이자율 적용은 불가 합니다.

제8조 특별중도해지(분할인출)사유 및 적용이자율

특별중도해지(분할인출) 사유	특별중도해지(분할인출) 이자율
□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□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□ 수탁자의 사임 □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□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□ 가입자의 사망 □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 □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(개인형IRP에 한함) □ 가입자의 해외이주(개인형IRP에 한함)	□ 계약기간 1년 미만 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 □ 계약기간 1년 이상 • 경과기간 1년 미만 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• 경과기간 1년 이상¹⁾ 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
□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	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적용된 이 예금의 이자율

1)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: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

예시) 경과기간 1년 이상 ~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

제9조 분할해지

-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하며,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일부해지의 경우에는 전항의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 -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
 - 2.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
 - 3.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

제10조 거래제한

이 예금은 양도, 질권설정, 담보제공이 불가하며,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거래방법

- ① 이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간에 전문(電文)으로 거래하므로 통장 실물은 발행하지 않습니다.
- ② 이 예금 계좌의 해지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예금자보호

-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및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
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<부 칙>

본 특약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.

<부 칙>

본 특약은 2011년 0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<부 칙>

본 특약은 2011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<부 칙>

본 특약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<부 칙>

본 특약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<부 칙>

본 특약은 2016년 06월 07일 이후 가입하거나 이 예금이 재예치된 가입자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<부 칙>

본 특약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<부 칙>

제1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제2조 (경과규정)

제6조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자동재예치 됩니다.

<부 칙>

본 특약은 2024년 0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